

충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협약 관련 안내

① 충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개요

- 충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호스피스·완료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임.

명 칭	충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관 할	대전·충남·세종
담당자 연락처	042) 280-8633

※ 위탁기관은 협약체결 후 협약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승인 후 익일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②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범위

- 위탁기관은 충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한 심의·상담·교육 등 아래의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

(상담)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하여 환자·환자가족·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함

- 상담 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상담 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 상담, 필요시 방문 상담

① 온라인 상담 : ✉ (ethicscommittee@cnuh.co.kr)을 통한 상담 의뢰

② 전화 상담 : ☎ 042) 280-8633

③ 방문 상담 : 기관 요청 시 방문하여 상담 제공

- 상담자 :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 상담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 안전



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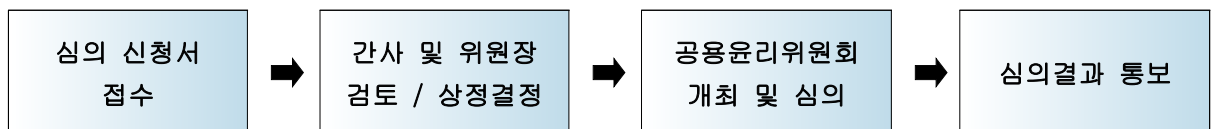
- 상담 후 공용윤리위원회는 해당 기록을 보관함.
- 위탁기관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기록을 공유·제공할 수 있음

(교육)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함.

- 교육 방법 : 집합식 대면교육, 온라인 교육 등
- 교육 횟수 : 연 1회 실시 단, 제도 시행 부진기관 및 당해 연도 신규 위탁 협약기관의 경우 추가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윤리 관련 교육, 사례 교육, 공용윤리위원회 역할과 필요성에 관한 교육
- 교육 시행 후 공용윤리위원회는 교육 내용 및 이수자 명단을 기록하고 관리

(심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 또는 담당의사가 이행 거부 시 담당 의사 교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심의 신청 절차



- 회의 개최 기준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요건과 사유가 있을 때 수시 회의를 개최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병원장,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③ 위원장은 회의를 공지하고 소집하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일 경우 72시간 이내에 개최함.

- 회의 방법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과 이행을 위한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사항에 따른 심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② 위원회는 연명의료 및 의료윤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경위를 진술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의 결과 통보

심의 후 공용윤리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탁기관 및 심의신청자에게 유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위원장 승인된 심의결과 통보서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신청자에게 공문과 함께 발송한다. 회의록 및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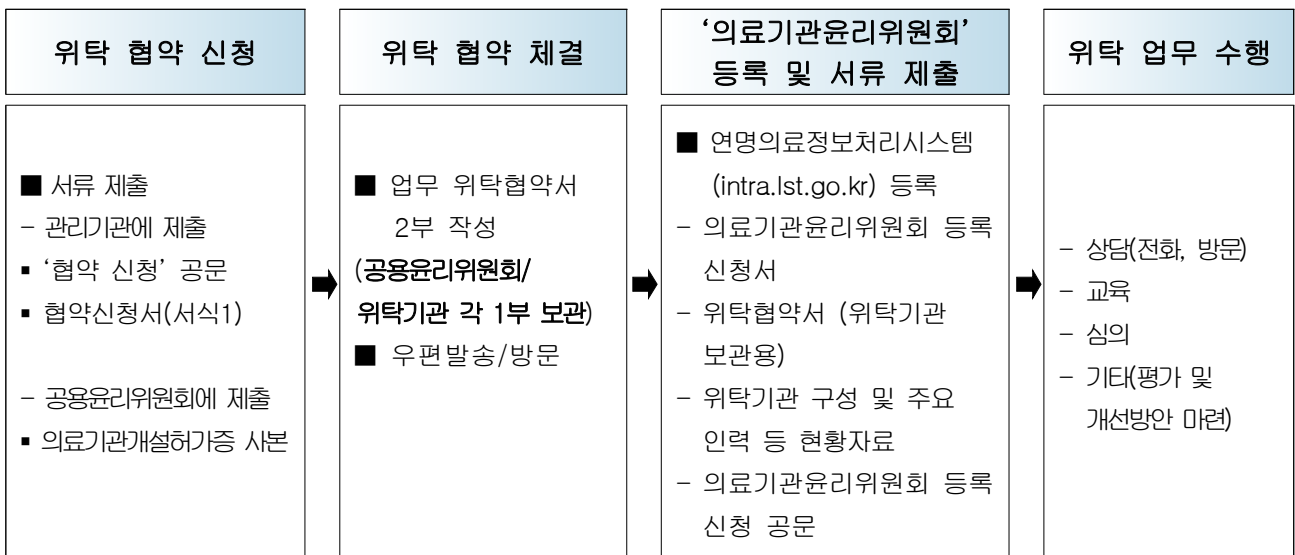
(기타)

위탁기관에서 시행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실적 및 통계 분석 등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③ 협약 체결 기준 및 절차

○ 위탁 의료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신청 → 검토 및 선정 통보 →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체결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 협약신청: 연중 상시, 이메일 접수(med_nibplst@nibp.kr)

○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의료기관운영관리팀 (02-778-9386)

○ 협약 기간

협약기간은 위탁기관의 기관장과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가능(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함)

○ **협약체결 방법**

대면 또는 서면으로 위탁기관장 및 충남대학교병원 공공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날인한 ‘공공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서’ 2부 (각 1부씩 보관) 작성

- (제출방법) 원본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암센터 5층 권역호스피스센터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지원사업 협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협약서

충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수탁 공용윤리위원회)와 00 의료기관(위탁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 수행과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간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업무】

- 가. 위탁기관의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상담
- 나. 위탁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 다. 위탁기관에서 요청한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
- 라. 위탁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 마. 위탁기관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제3조 【공용윤리위원회의 의무】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시간, 장소, 방법 등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약 당시 위탁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기관의 의무】

위탁기관은 위탁 업무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계획을 기관 내에 안내하고, 소속 의료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공용윤리위원회가 협약 이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 비용】

공용윤리위원회는 전년도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받은 위탁비용을 통하여 위탁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 유지】

양 협약기관은 본 협약 또는 법령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해지에 대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협약에 따른 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일방에 의해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기관은 그 사유를 공용 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기관과 수탁 공용윤리위원회는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사본 1부를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송부한다.

년 월 일

충남대학교병원장

00 의료기관의 장
